

울산지방법원 2024. 2. 2 선고 2023가단167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바른담당변호사

변론종결 2023.12.8.

판결선고 2024.2.2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9,104,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-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C이 운영하는 주형 및 금형 제조업체인 D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143,088,634원을 받지 못하였다. 피고는 D의 직원으로서 C에 한 물품대금채권이 없음에도 C과 공모하여 피고를 채권자, C을 채무자로 하는 청구금액 59,104,200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이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E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59,104,200원을 수령하였다. 피고는 이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추심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59,104,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판단

가.갑 제2, 3, 4, 6, 7호증,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2차전3202호로 C에 대한 자동차 금형 관련 물품대금 59,104,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, 위 법원은 2022. 12. 13. 'C은 피고에게 59,104,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(이하 '이 사건 지급명령'이라고 한다)을 하였고,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,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23타채100244호로 청구금액을 59,508,648원, 채무자를 C,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E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, 위 법원은 2023. 1. 9.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실,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주식회사 E으로부터 59,508,648원을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나.그러나 위 가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허위채권에 기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고,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(설령 피고가 허위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이에 기하여 C의 채권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, 원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 추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

법률적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.).

3.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 사 박